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-23호

우편법시행령 제13조 및 우편법 시행령 제7조,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일반통상 소형포장물 우편요금 선납봉투(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6-36호)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3월 8일

우정사업본부장

일반통상 소형포장물 우편요금 선납봉투 폐지에 관한 공고

1. 폐지사유

- 통상우편 시장잠식을 차단 및 통상우편물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입하였으나 우편 수취함이 개방되어 있어 분실에 대한 우려로 그 이용량이 저조함에 따라 폐지함

2. 폐지 대상

- 일반통상 소형포장물 우편요금 선납봉투

3. 접수유지 : 신규판매는 중단하고 기 판매된 선납봉투는 종전대로 서비스 지속 유지

4. 시행일자 : 2017년 4월 1일